

# 민간투자사업의 해외투자유치



안세법률사무소

권경현 변호사

khkwon@ahnse.com

# 1. 민간투자사업에서 해외투자유치의 필요성

# 1. 민간투자사업에서 해외투자유치의 필요성

## 해외투자유치 현황

-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한 해외투자금액은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14개 사업에 약1.47조원 수준임. 이는 전체 민간투자사업의 총투자비 52조원의 2.8%로 외국인 투자 비중은 낮은 편임
- ☞ 국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활동 필요
- 개발도상국, 자원개발 프로젝트 등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의 해외진출 또한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법제도 등의 정비 및 검토가 요청됨

# 1. 민간투자사업에서 해외투자유치의 필요성

##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검토사항

- 민간투자사업에서 해외투자 유치 촉진을 검토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제도의 의의, 추진방식, 추진절차 등에 대한 개관과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, 합작투자 등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함
- 한-미 FTA, 한-EU FTA 의 중소기업보호, 원산지 규정 등과 관련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제도 정비 사항을 분석하고, 이에 대한 대처방안 및 비즈니스 모델 등을 검토

## 2.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및 내용

## 2.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및 내용

### 민간투자사업의 의의

- 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, 운영하여 오던 도로, 항만, 철도, 학교, 환경 등의 사회기반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

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조 목적, 제2조 정의】

-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와 민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짐
  - 사업시행자 (SPC, Special Project Company)는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시설을 건설한 후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면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관리운영권 부여
  - 사업시행자는 설계사, 건설사, 운영사,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

## 2.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및 내용

### 사회기반시설: LED 가로등

-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될 것을 요함
  -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,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로 (가).목 - (수).목에 열거된 시설
- ※ (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방자치단체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) LED 가로등이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는지?
- ☞ LED 가로등은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로 (나).목의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

## 2.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및 내용

### 사회기반시설: 신재생에너지설비

-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(수).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(시행령 제1조의 2 장애인복지시설, 신재생에너지 설비, 자전거 도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)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
  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, 이용, 보급, 촉진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도입되면서 에너지공급사업자의 태양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설비 구축이 필요함
  - ※ (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방자치단체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)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요건을 갖추어 추진될 것을 요함

## 2.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및 내용

### 사회기반시설: 재이용시설

-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시행 2011.6.9) 부칙 제7조 제3항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(사).목 및 (아).목 개정
  - “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”을 “공공하수처리시설,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하,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”로 개정하여 하, 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이 추가됨
- ※ 하,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: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, 공급 관로

# 3. 민간투자사업추진에 있어 법적 쟁점

## 사업시행자

- 주무관청은..법인설립계획을 제출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당해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. (법 제14조 제2항)
  - 실시협약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예정자 명의로 체결한다.(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89조, 131조)
  - 사업시행자는 ‘공공부문 외의 자’로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1호는 민간부문에 공공부문 외의 법인과 민관합동법인을 포함
- ※ 공공부문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(법 제2조 제10호)
  - 가.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
  - 나.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
- ※ 민관합동법인이라 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제7호의 사업시행자를 말함 (법 제2조 제12호), 예를 들어 공공부문인 수자원공사와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은 민간투자사업법인 가능

## 2.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및 내용

###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

- 수익형 민간투자사업(BT0:Build-Transfer-Operate)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기반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사업시설을 운영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

【 도로, 철도 등 수익(통행료 등) 창출이 용이한 시설】

- 임대형 민간투자사업(BTL:Build-Transfer-Lease)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기반으로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게 임대하고 그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음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

【 학교, 문화시설 등 수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려운 시설】

## 2.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및 내용

###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

-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사업제안의 주체에 따라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됨
  - 정부고시사업은 정부가 대상시설을 지정하고 대상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업임 【BTL사업은 정부고시사업의 형태로만 사업이 추진됨:민간투자법 제9조】
  - 민간제안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일정 수준의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부문에서 아이디어를 내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

## 2.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및 내용

### BT0사업의 추진절차

- BT0 정부고시사업의 추진절차

- 1단계 : 예타, 타당성 분석
- 2단계 : 대상사업선정- 민간투자심의위원회(“민투심”) 심의
- 3단계 :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- 민투심 심의
- 4단계 : 사업자 모집 공고
- 5단계 : 평가/ 우선협상대상자 선정
- 6단계 : 협상/ 실시협약 체결, 사업시행자 선정- 민투심 심의
- 7단계 : 실시설계/ 실시계획 승인
- 8단계 : 착공/ 건설/ 운영

## 2.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및 내용

### BT0사업의 추진절차

- BT0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

- 1단계 : 제안서 제출

- 2단계 : 적격성 조사 (제안서 내용 검토)

- 3단계 : 제3자 제안 공고- 민투심 심의

- 4단계 : 평가/우선협상대상자 선정

- 5단계 : 협상/실시협약 체결(사업시행자 선정) - 민투심 심의

- 6단계 : 실시설계/ 실시계획 승인

- 7단계 : 착공/ 건설/ 운영

## 2.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및 내용

### BTL 정부고시사업의 추진절차

- BTL 정부고시사업의 추진절차

- 1단계 : 사업계획 수립, 타당성 조사
- 2단계 :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
- 3단계 : 사업자 모집 공고
- 4단계 : 평가/ 우선협상대상자 선정
- 5단계 : 협상/ 실시협약 체결, 사업시행자 선정- 민투심 심의
- 6단계 : 실시설계/ 실시계획 승인
- 7단계 : 착공/ 건설
- 8단계 : 운영 (임대서비스 제공)

#### BTL 한도 요구

- 조정 및 국회의결
- 한도 통보

## 2.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및 내용

### 적격성 조사

- 1단계 : 사업추진의 타당성 판단 (Decision to invest)
  - 비용편익분석 등을 실시하여 국가경제적으로 해당사업의 추진타당성 확보 여부 판단 (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법에 준하여 경제성분석, 정책적분석, 종합분석)
- 2단계 :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(Decision to PFI)
  - 민간투자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격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Value for Money 분석 (정량적 분석-해당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를 가정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를 산정하고 이를 민자사업의 실행대안과 비교함으로써 민자사업 추진의 정당성 확보- 및 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여 판단)
- 3단계 : 민간투자실행대안 구축
  - 민간제안 재무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부부담액 규모 분석 및 정부측 재무대안 도출

### 3. 민간투자사업에서 해외 투자 촉진

### 3. 민간투자사업에서 해외 투자 촉진

#### 민간투자사업법인

- 민간투자사업법인은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합작투자 형식이 아니라 설계사, 건설사, 운영사, 재무적 투자자 등의 출자지분 비율로 구성이 이루어짐
- 그러나,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될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출자자인 설계사, 건설사, 운영사, 재무적 투자자 등은 합작투자 형식의 설립이 가능하고, 중소기업 우대조항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자격 제한을 엄격히 두고 있지는 않음

# 3. 민간투자사업에서 해외 투자 촉진

## 합작투자

- 합작투자계약은 국적이 상이한 둘 이상의 자연인, 사회 또는 공법인 등이 특정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해 상당기간 투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
  - 자본 및 기술의 제휴를 통해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직접투자로 단순히 배당 또는 이자수익을 목표로 하는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간접투자와의 구별
  - 투자목적물로는 현금출자 이외에도 기술, 제조방법, 특허권, 상표권 등도 가능
  - 개발도상국 등에서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 외국기업의 단독투자를 금지시키거나 외국기업에 대한 정부규제가 강할 경우에는 개발도상국 등의 자국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현지국가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

# 3. 민간투자사업에서 해외 투자 촉진

## 외국인투자촉진법

- 국내 민간투자사업에서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규정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내용에 대한 검토
  -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투자주체는 외국국적을 보유하는 개인과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 협력기구를 의미하는 외국인 (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)
  -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, 소득세, 등록세,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감면이 가능하고, 투자원본 및 과실의 대외송금 보장 (법 제3조 등)
  -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고,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투자진흥실 설치,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, 고시 등 가능 (법 제14조-19조)

# 3. 민간투자사업에서 해외 투자 촉진

## 외국인투자 규제 현황

-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하지만,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거나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,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,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 투자 규제를 규정
- 공공산업(미디어, 통신, 금융, 원자력발전), 자원산업(수산업, 광업 등) 관련법에서 개별 법률에 의한 외국인 투자 규제

# 3. 민간투자사업에서 해외 투자 촉진

## FTA 영향 : 중소기업 보호

- 한-미 FTA는 정부조달의 범위에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하는 규율체계를 택하여 WTO GPA를 준용하되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회원국 규정은 양허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보호
  - 한-EU FTA는 별도의 부속서로 민간투자사업을 규율하되 개별 조항(제6항)에서 한-EU FTA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회원국의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
- ☞ 중소기업 보호에 관해서는 FTA 협정문에서 예외 사항으로 하였으므로 국내 중소기업 보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

# 3. 민간투자사업에서 해외 투자 촉진

## FTA 영향 : 원산지

- 원산지규정(rule of origin)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, 특혜 또는 비특혜 무역조치의 효과를 규정하는 기준 및 절차임
- 원산지규정은 적용목적에 따라 비특혜원산지규정(non-preferential rules of origin)과 특혜원산지규정(preferential rules of origin)으로 구별됨
- ☞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되는 **FTA**의 원산지 규정은 비특혜원산지규정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조달되는 물품,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통상적인 무역과정에서 적용되는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의 규정과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임

# 3. 민간투자사업에서 해외 투자 촉진

## 관련검토 : 특혜원산지규정

- 특혜원산지규정은 특정 국가 사이에 체결된 FTA에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경우에는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임
  - 특히 2011.7.1. 발효 예정인 한-EU FTA의 경우 상품협정문에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은 상품만이 일방 당사국에서 타방 당사국으로 수출될 경우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면서 어떤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는지에 대해 부속서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함
  - 부속서에서는 원산지 결정원칙, 누적, 불충분공정, 직접 운송 등 원산지규정의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통관절차 및 통관협력 관련도 정함

# 3. 민간투자사업에서 해외 투자 촉진

## 관련검토 : 특혜원산지규정

- 한-EU FTA는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,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외지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함
  - 자동차, 기계, 전자 및 석유화학, 철강제품에 대해 60%이상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,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
  -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는 역외산 부품비율 45%이하, 자동차부품은 역외산 부품비율 50%이하 또는 세번변경기준 적용, 모터사이클 등 기타 자동차는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허용치 50%이하, 철도차량은 세번변경기준, 자전거는 역외산 허용치 45%
- ☞ EU의 경우 그 동안 정치적 이유에서 FTA를 체결한 것과 달리 한국과의 FTA는 경제적 성격이 강한 점에서 보다 엄격한 원산지 검증이 예상됨

# 3. 민간투자사업에서 해외 투자 촉진

## 관련검토 : 특혜원산지규정

### ● 비즈니스 활용사례

- 역외가공 비즈니스 모델 : 한-EFTA FTA에서 우리나라 생산자가 국산 부분품을 사용하여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 등 역외국에서 반제품을 만든 후 한국으로 재반입하여 최종 가공한 물품에 대해 역외가공 비용이 10% 미만인 경우 품목에 관계없이 한국을 원산지로 인정하여 스위스 등 EFTA 국가에서 특혜관세 혜택 가능 (한-EU FTA에서도 역외가공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의 구체화 필요)
- 국내조달, 생산을 통한 원산지 전환 : 원산지 기준 충족 위해 기존 수입하거나 해외 생산 공정을 국내조달, 생산으로 전환하는 방안 고려

👉 (성공사례) 한-ASEAN FTA에서 화장품 생산 D회사는 FTA 체결 전에는 OEM 방식으로 일본에서 생산하여 8% 관세를 적용 받았는데, FTA 발효 이후 OEM 생산 국가를 말레이시아로 변경하여 아세안 국가로 수출할 경우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여 클렌징폼 1개 품목에서만 약 6억원의 관세를 절약하여 가격경쟁력 확보

# 감사합니다



서울 종로구 운니동 98-5 삼환빌딩 10층 대표전화 : 02-743-0400 팩스 : 02-762-2900  
[www.ahnse.com](http://www.ahnse.com)